

2020.10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확인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본 안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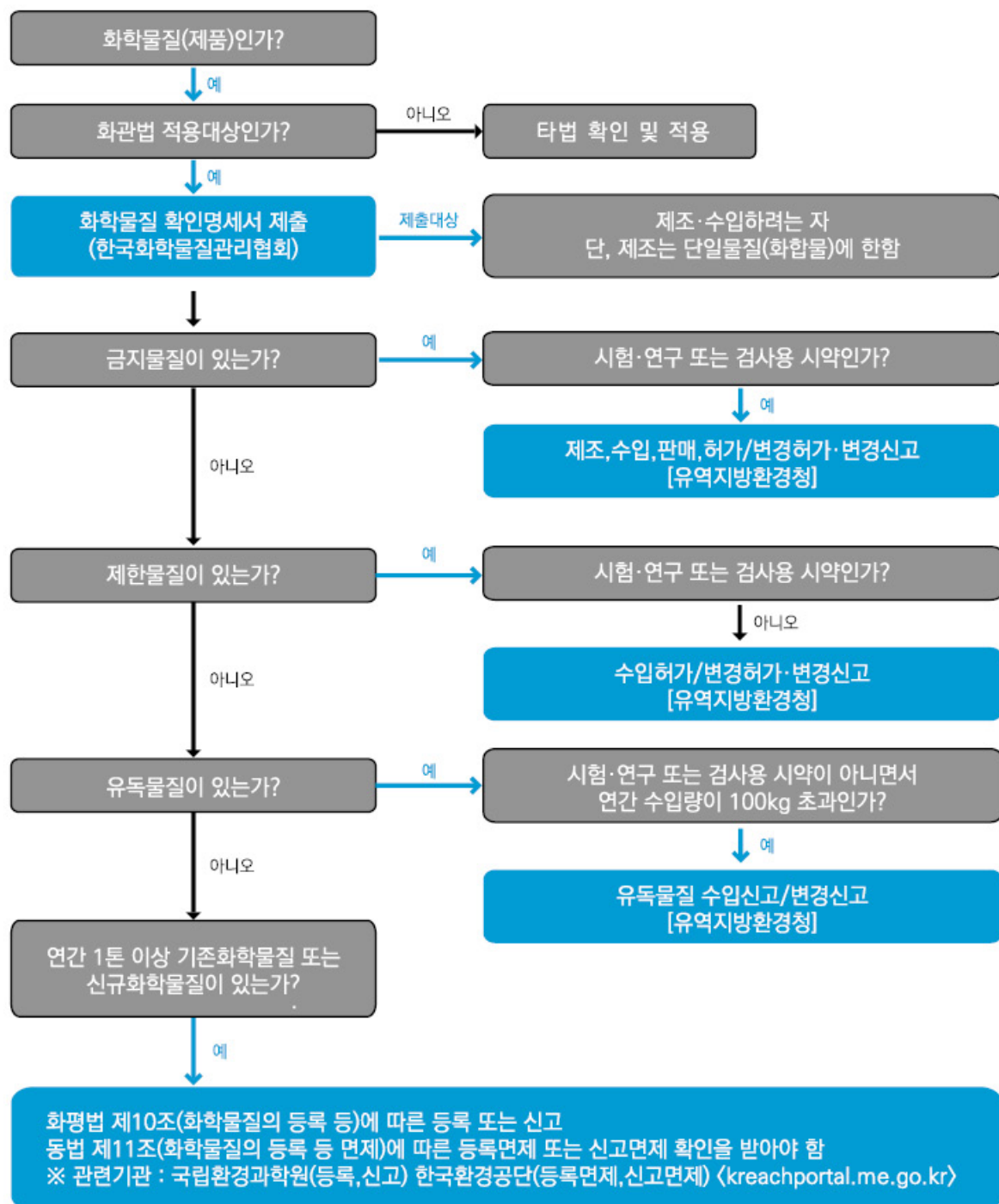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수입 화학물질 주요 제도이행 흐름도



※ 허가물질은 현재 미지정으로 제외



구분	업무명	처리기간	관할기관
제조·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유독물질	수입신고	2일	유역지방환경청
	수입변경신고	2일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15일	
	변경허가·변경신고	10일	
	수출(변경)승인	90일(2일)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20일	
	제조·수입·사용 재허가	10일	
제한물질	수입허가	7일	
	수입변경허가·변경신고	5일	
	수출(변경)승인	90일(2일)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15일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	10일	

※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의 등록·등록면제 또는 신고·신고면제는
「화평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 **화학물질이란?**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 **규제대상 화학물질이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제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제출 횟수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 법 적용제외(제출제외) 화학물질

아래 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적용 대상입니다.)

- ※ 그 외 특이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면제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로서,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이 여기에 포함됨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55호, 2020.7.13., 일부개정)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 규제대상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 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함

예) 유독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관법』상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예)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평법』상 등록·등록면제 또는 신고·신고면제

▶ 제출 방법

-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등기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KCMA빌딩 3층, 확인제도팀 앞
-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 www.ols.kcma.or.kr 접속 - 로그인후 서식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요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29.)

(1)

[] 제조 []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위하여, 세상이 어두운 칸은 신형안이 적지 않습니다.

(임의)

(2)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조 (수입)자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3)

제조 (수입) 제품명세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 No.	⑤ 주요용도
⑥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 수출자 [] 확인을 위임받은 자)				

(4)

수입제품 (상품)정보	⑦ 모델 · 규격	
----------------	-----------	--

(5)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 및 팩스 전자우편

(6)

구분	함유여부	
	있음	없음
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신규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⑧ 확인 내용	유독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허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제한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금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7)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하는 위 재료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제조(수입)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1)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체크

(2) 제조(수입)자 :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수입)자의 내역을 기재

- 제조자 :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제조(수입)제품명세

- 제품명(상품명) :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수입하는 제품명을 기재. 다만, 첨부서류의 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수입하는 제품은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제품명 입력 불가)
- 수입국 : 수입의 경우 관세법 상 수입신고서(면장)의 적출국을 기재
- HSK No. : 수입의 경우 관세법 상 수입신고서(면장)에 명시할 관세·통계통합 분류표의 10자리 품목번호(HSK No)를 기재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세법 상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바람

○ 확인방법

성분명세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	확인관련서류제공자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은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 수입인 경우 번역본이 아닌 원본만 인정 가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국내·외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대신하여 ⑥란의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성분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등을 적은 서류. 뒷면 성분명세서 예시 참조.

(4) 수입제품(상품)정보

- 모델·규격 :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규격사항을 기재 (단순히 Kg 또는 powder 등 단위규격 또는 성상만 기입하는 것은 아님)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세법 상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바람

(5)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위의 “제조(수입)제품명세” 내역의 “⑥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란에 체크한 경우에는 확인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 자의 상호,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

(6) 확인내용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함

(7) 제조(수입)자의 명판 또는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

-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임

※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직인, 명판 또는 서명(제조일 경우 직인, 명판만 인정)이 들어간 “성분명세서(성분 100% 명시)”를 첨부하여야 함

- ▶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 ▶ 제조(수출)자가 전성분 및 함량을 모두 밝힌 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Product name : QuRar 4040-a

Chemical name	CAS No.	Content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25215-62-7	42%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styrene and 1,2-ethanediol	27881-32-9	3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23%
		<u>TOTAL 100%</u>

Best Regards,

Name :(Signature or Seal)

Name of Department :

DATE :

※ 비고 : 이 경우 함량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 제조(수출)자가 전 성분을 공개하였으나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함량 정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단,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시 함량 또는 함량범위 공개 필수)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PRODUCT NAME : LSB-404052

Chemical name	CAS No.	Content
Decanoic acid octyl ester	2306-92-5	
Methylphenylsilane	766-08-5	
1,2,4-Triazole-3-carboximide	3641-08-5	
Xylene	1330-20-7	< 3%
Toluene	108-88-3	0.1~0.5%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sition. (함량을 대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내용임)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Name of Department :

DATE :

※ 비고

-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함량을 대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
-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밝혀야 함(기준고시 함량 미만일 경우도 이에 해당함)

*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화학물질에 대하여 정확한 함량 대신, 함량범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예) 수산화나트륨 유독물질 고시 정보 : 수산화나트륨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① 수산화나트륨 < 3% (유독물질 고시함량 미만임이 명확함)
- ② 수산화나트륨 4~7% (유독물질 고시함량 판단이 어려움)



▶ Letter of Confirmation(LOC)

To whom it may concern :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an be marked with 'CBI'.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Phase-in substance(s)	CBI	CBI	CBI
Non phase-in substance(s)	CBI	CBI	CBI
▪ Mandatory to submit all information on regulated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Toxic substance(s)	50-00-0	Formalin	50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50-00-0	Formalin	50
Prohibited Substance(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50-00-0	Formalin	50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phase-in substances, non phase-in substances,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regula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which checked at ncis(<https://ncis.nier.go.kr/en/main.do>).

Date :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용어설명

- Phase-in substance(s)
기존화학물질
- Non phase-in substance(s)
신규화학물질
- Toxic substance(s)
유독물질
-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허가물질
- Restricted substance(s)
제한물질
- Prohibited substance(s)
금지물질
-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사고대비물질

※ 자세한 용어 설명은 14page 참고 바랍니다.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ncis.nier.go.kr> 입력 또는 포털사이트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

※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② 검색방법

- ※ 제조, 수입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명, CAS No 등을 입력 후 검색
- ※ 외국의 제조(수출)자에게 안내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영문 메뉴 참고 (<http://ncis.nier.go.kr/en/>)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CIS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NCIS logo and the text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To the right of the header are links for '시스템소개', 'SITE MAP', and 'ENGLISH'.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화학물질통합검색',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시험 자료', '정보마당', and '수은 정보'. The main content area has a large search bar with a magnifying glass icon and a red circle with a question mark next to it. Below the search bar is a list of '많이 찾는 물질' (Frequently searched substances) with links: '황산', '1310-73-2', '108-88-3', '7732-18-5', and '67-56-1'. There are four circular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categories: '유해화학 물질' (Hazardous chemicals), '중금속 관리 물질' (Heavy metal management substances), '염, 물연변이성 물질' (Salts, mutagenic substances), and '사고 대비 물질' (Emergency response substances). At the bottom, there are three sections: '최근 개정고시' (Recent amendments) with a computer icon, '시험 자료 목록' (Test material list) with a lightbulb icon, and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with a flask icon. The text in the last section describes the system's function in managing chemical substances and their evaluation.

③ 검색 결과 확인 방법

화학물질통합검색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시험 자료

정보마당

수은 정보

화학물질통합 검색

검색결과-총 1건

10개씩보기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한글 및 규제정보	비고	
			기존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	중점관리 물질	암·돌연변이 성 물질	사고대비 물질			
108-88-3	Toluene	톨루엔 [이명 : 메틸벤젠; 메틸벤졸; 메틸벤젠:]	KE-33936	97-1-298				28	정보보기	등록유예기간 없음

1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와 검색 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대량생산화학물질이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전세계에서 천톤 이상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임)
- 다만, 유독물질의 염류(salts)나 중금속 화합물은 개별 물질에 따라 유독물질 검색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시내용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제정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결과 유해화학물질은 유독, 허가, 금지, 제한물질을 말하며,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연도표기 다음)는 1=유독물질, 4=금지물질, 5=제한물질입니다.
- "중점관리물질"은 환경부 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따른 화학물질이며 <별표1>은 '19.7.1. 시행, <별표2>는 '21.7.1. 시행입니다.
- "암·돌연변이성 물질"은 환경부 고시 「20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하며, 해당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대상에 해당함.
- 검색물질이 "수화물"인 경우 수화물을 제외한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에 있으면 신규화학물질이 아닙니다.
- "비고"란에 '등록유예기간 없음'으로 표시된 물질은 2015.7월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며 그 수화물·무수화물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포함됨.
- "유독물질등 혼합물질 한량 및 규제정보"를 클릭하면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제품내 규제한량 및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란의 사고대비물질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되는 내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비고항목) 해당여부 확인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와 검색 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로 판단

— CAS번호, 영문명 등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물질정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물질정보

[의견제시](#) [목록으로](#)

- **톨루엔** : 메틸벤젠; 메틸벤졸; 메틸벤젠
- **Toluene**
- CAS 번호 : 108-88-3

전체	기본 정보	분류 표시	시험자료	기타자료
----	-------	-------	------	------

일반정보

구조식	• [CAS 번호] 108-88-3 • [분자식] • [기준화학물질] KE-33936 • [분자량]	• [RETECS 번호] • [UN번호] 1294 • [EC 번호] • [HS번호] • [CSC번호]
-----	--	--

물질번호 및 함량정보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비고
기준화학물질	KE-33936		
유독물질	97-1-298	톨루엔 및 이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고대비물질	28	톨루엔 및 이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대량생산화학물질	V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131		

※ 대량생산화학물질은 OECD회원국 별로 연간 천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화학물질로 기준화학물질 해당여부 판단과는 별개임.
 즉,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 기준화학물질 아님

고시정보

고시일자	고시정보
2014-12-30	기준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2018-03-30	유독물질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9호
2015-07-01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 고시일로부터 3년

분류표시

신호어 : 위험 [GHS02] [GHS07] [GHS08]	M계수 : - UN No : 1294	라벨 인쇄
--	-------------------------	-----------------------

유해성분류	유해 - 위험표시문구
인화성 액체	2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피부 부식성/자극성	2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생식독성	2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 (노출되어도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노출경로가 있다면 노출경로를 기재)
표적장기-1회 노출	3 H336 흡입 또는 흡기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표적장기-반복 노출	2 H373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또는, 영향을 받은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노출되어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노출경로가 있다면 노출경로를 기재)
흡인 유해성	1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화관법 제2조**

1.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2.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3. **“허가물질”**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4.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5.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6.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7.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화평법 제2조

1.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참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삭제, 2018.3.20.>

- ※ 단, 화평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 『화관법』 및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전자민원서비스(<http://ols.kcma.or.kr>) 내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관련서식 (2020.9.29.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29.)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조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조 (수입) 제품명세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 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⑥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사: [] 제조자 [] 수출자 [] 확인을 위임받은 자)		
수입제품 (상품) 정보	⑦ 모델 · 규격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 및 팩스 전자우편	
⑧ 확인 내용	구분	함유여부	있음	없음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유독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허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제한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금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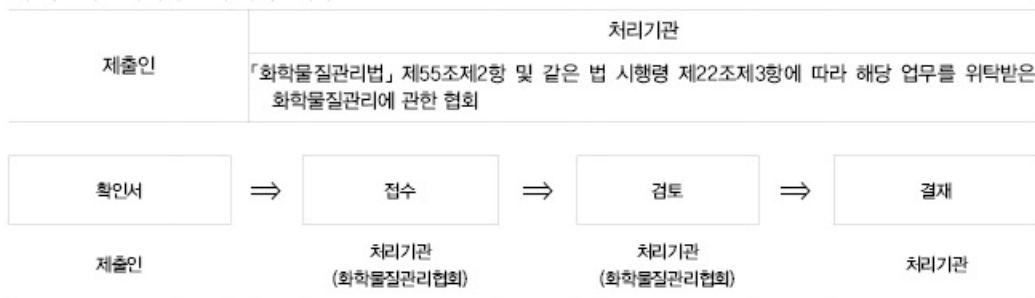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1부
------	---

작성방법

1. “제조자”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2.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7.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⑧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8.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9.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10. ⑧란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련서식 (2019.12.20.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린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 청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수입제품(상품) 정보	⑥ 모델 · 규격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확인신청 내용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유독물질 해당 여부 [] 허가물질 해당 여부 [] 제한물질 해당 여부 [] 금지물질 해당 여부 [] 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수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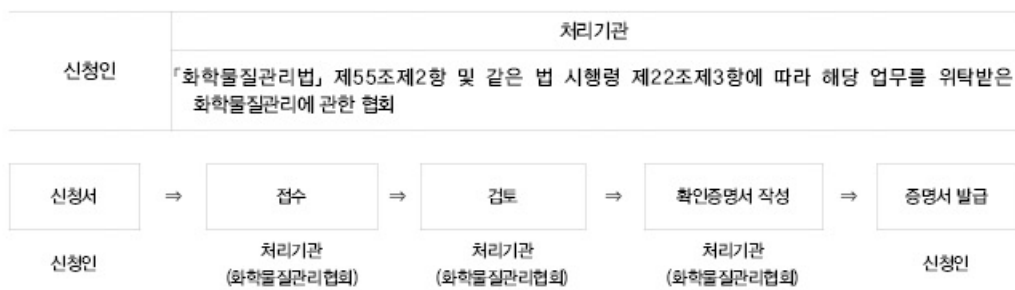
첨부서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	---	--

작성방법

-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 ⑤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신월동 227-1), KCMA빌딩
<http://www.kcma.or.kr>
TEL : 02-3019-6773~6778 FAX : 02-587-2204